

인사규정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8.8.21

케이티 노동조합
위원장 김 해 관



[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'회사'라 한다) <u>G직, C직, A직 및 Sales직</u> 직원(이하 '직원'이라 한다)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근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'회사'라 한다) <u>G직, A직</u> 직원(이하 '직원'이라 한다)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근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[개정내용] C,Sales 직의 G 직 전환에 따라 삭제</p>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'G직'이라 함은 상무보 미만 직위의 직원 중 <u>C직, A직, Sales직 및 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2. 'C직'이라 함은 <u>고객접점분야에서 회사 상품의 개통과 A/S 및 판매를 전문적이고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.</u></p> <p>3. 'A직'이라 함은 해외고객 및 국내 공공고객, 대형기업고객 대상으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<u>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.</u></p> <p>3의2. '<u>Sales직</u>' 이라 함은 국내 유통영업 및 고객 리텐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'G직'이라 함은 상무보 미만 직위의 직원 중 <u>A직 및 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2. <삭제 2018.XX.XX></p> <p>3. 'A직'이라 함은 해외고객 및 국내 공공고객, 대형기업고객 대상으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<u>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</u></p> <p>3의2. <삭제 2018.XX.XX></p>	<p>[개정내용] C,Sales 직의 G 직 전환에 따라 삭제 A 직 환직 관련 내용 수정</p>

현 행	개 정	비 고
<p>4. ~5. <생략> 6. <u>'환직'이라 함은 G직을 A직으로 임명하는 것과 G직에서 A직으로 임명한 직원을 다시 G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4. ~5. <생략> 6. <u>'환직'이라 함은 G직을 A직으로 임명하는 것과 A직을 G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
<p>제12조(전직과 환직) 회장은 각 급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환직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환직기준, 자격요건, 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 <u>다만 A직으로 채용된 자는 환직할 수 없다.</u> <개정 2014.04.11(시행 2014.05.01)></p>	<p>제12조(환직) 회장은 각 급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환직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환직기준, 자격요건, 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 <삭제></p>	<p>[개정내용] A 직 환직전환 불가 내용 삭제</p>
<p>제24조(직권면직) 인사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<u>제3호 및 제6호</u>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. ~ 5. <생략> 6. 2회 이상 '대기발령' 시</p>	<p>제24조(직권면직) 인사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. ~ 5. <생략> 6. <삭제></p>	<p>[개정내용] 저성과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관련 삭제</p>

현행	개정	비고
<p>제27조(희망퇴직) ① 회장은 <u>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</u>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<u>대상직종,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</u>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27조(희망퇴직) ① 회장은 <u>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경영합리화 또는 직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</u>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<u>자격기준, 방법, 절차 등 세부사항은</u>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[개정내용] 희망퇴직 제도 대상 확대로 사유를 추가</p>
<p>제37조(대기발령) ① 제24조 제6호의 '대기발령' 이라 함은 2년 연속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 중 업무실적이 직원 평균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제24조 제6호의 대기발령 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교육훈련 제공 등 생산성과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</p> <p>③ 제24조 제6호의 대기발령에 대한 세부기준, 절차, 생산성 향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37조(대기발령) <삭제 2018.XX.XX></p>	<p>[개정내용] 저성과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관련 삭제</p>
<p>제41조(직급) G직의 직급서열은 G5 내지 G1, A직의 직급서열은 <u>A5 내지 A1, C직의 직급서열은 C5 내지 C1, Sales직의 직급서열은 S5 내지 S1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1조(직급) G직의 직급서열은 G5 내지 G1, A직의 직급서열은 <u>A5 내지 A1으로 한다.</u></p>	<p>[개정내용] C,Sales 직의 G 직 전환에 따라 삭제</p>

현 행	개 정	비 고
<p>41조의 2(호칭) G직, <u>A직, C직 및 Sales직</u>의 호칭은 직급서열에 따라 부장, 차장, 과장, 대리, 사원으로 한다.</p>	<p>41조의 2(호칭) G직, <u>A직</u>의 호칭은 직급서열에 따라 부장, 차장, 과장, 대리, 사원으로 한다.</p>	<p>[개정내용] C,Sales 직의 G 직 전환에 따라 삭제</p>
<p>제44조(승진의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승진은 제한할 수 있다. 1. <생략> 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u>가. 감봉: 12개월</u> <u>나. 견책: 6개월</u> 3. <생략></p>	<p>제44조(승진의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승진은 제한할 수 있다. 1. <생략> 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u>가. 정직 : 18개월</u> <u>나. 감봉 : 12개월</u> <u>다. 견책 : 6개월</u> 3. <생략></p>	<p>[개정내용] 정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 추가</p>

※ 부칙 (2018. XX. XX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, 제3조 제1호, 제2호 및 제3의2호, 제41조,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C직 및 Sales직 직원의 G직 전환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.